

평창올림픽 3大 논란 적극 해명나선 道

- ① 재정 위기 ... 가용재원 연간 2천억 문제 없다
- ② 사후 활용 ... 방안 미흡 아닌 현실 대책 고심
- ③ 분산 개최 ... 경기장 대회 이전 준공 불가능

도는 19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제기되는 '도 재정위기, 사후활용 대책 미흡' 등에 대해 해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한 분산개최 요구, 정부의 소극적 여산 지원 기조의 비현실성을 설명하고 논란을 잠재워 성공 개최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도 재정위기" vs "재정운영 문제 없어" - 원주·강릉 철도 등 SOC사업을 포함해 총 11조4,311억원의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부담에 의한 도의 재정위

기 우려에 대해 도는 "연간 2,000억원의 (자체)가용재원이 있어 재정운영과 관련해 일부가 우려하는 수준의 재정 위기는 없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직접시설 비용은 1조2,600억원이다. 100% 국비가 투입되는 철도와 국도 등 간선교통망 사업비는 8조8,472억원, 선수촌 등 민간자본 투자사업비는 1조3,239억원이다. 올림픽 준비 기간 6년간 도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전

체의 2.7%인 3,098억원(연간 516억원)이다.

■ "사후활용 대책 미흡, 소극적" vs "현실적인 방안 마련 고심" = 일부 중앙 부처와 정치권은 물론 도내에서도 "강원도의 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올림픽 유산으로 남기는 방안을 세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활용 주체나 방안이 없으면 이전 또는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강원도가 마치 사후활용 방안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내고 있는데, 도의 고민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베이징의 유치가 유

력한 2022년 동계올림픽, 레저 등 관광산업 패턴 변화, 국내의 투자관심 변화 등의 여건도 눈여겨 봐야 하는 것이 사후 활용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분산개최는 없다" = 도는 아이스하키 I 경기장 원주시 이전 요구에 대해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대회 전 경기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IOC와의 재협상, 재정세, 도시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절차에만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원주시의 논리대로 오는 3월 착공한다고 해도 절대 공사기간 29개월을 감안하면 2017년 9월에 준공, 2017년 3월로 계획된 테스트이벤트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hokuy1@

강원경제 새도약 결의 다진다

강원경제인대회·신년인사회
원주 호텔인터불고서 22일 개최

강원도내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15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가 오는 22일 오전 11시 호텔인터불고원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강원도민일보와 강원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도내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 강원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품질경영연구소



대표 온세현 박사(사진)를 초청,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품질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마련된다.

온 박사는 이날 격변하는 국내외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조업에서의 품질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 품질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되는 품질의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강원도는 2015년 주요 경제진흥시책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에게 현안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전문건설협회 도회 오늘 평창서 정기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회장 이봉찬·사진)는 20일 오전 11시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평창홀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협회발전에 기여한 유공

자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 △박영식(금영토건) △김진섭(남산건설) △신승근(승원건설) △김수현(유원건설) △신은주(세현건설)

◇도의장 표창 △편명철(대면건설) △염경인(동천건설) △최대규(창성건설)

◇도교육감 표창 △김진숙(부강) △조병언(웅성이앤씨)

◇원주국도관리청장 표창 △김동필(서하) △정계숙(세승)

◇전문건설협회 도회장 표창 △박희순(영재개발) △오성진(덕천산업) △김기호(대보건설)

△현종철(부일엔지니어링) △이후진(삼강건설) △이철웅(유티이앤씨) △장흥기(세동) △최대수(동서기업) △유동균(불건설)

△염비호(강원건설) △김영자(건주) △주재국(국도건설) △강은주(우리건설)

도민을 생각하는 신문		도민이 사랑하는 신문	
구독신청·배달	260-9500	244-7100	
광고문의	260-9800	257-2592	
출판상담	260-9400	243-7008	
영월	373-7001	373-7003	
평창	332-3388	333-5577	
정선	562-0672	562-0674	
철원	452-6411	452-6410	
화천	441-9000	441-9005	
양구	482-7500	481-7933	
인제	461-7421	461-7422	
고성	461-7421	681-6009	
양양	672-7000	672-3931	

다 ▶ 구독료: 월3,000원 (부 600원)

NEWS &

끊이지 않는 민간건축주 '미질'... 대안은 없나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 적용 확대를”

#1. A건설사는 B대학에서 발주한 500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수행했으나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학교 측이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해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A사에 미루면서 대금을 못 주겠다고 버틴 것이다. A사는 공사를 수주하면서 대학에 학교발전 기금까지 낸 상태였다.

#2. C사는 50억원의 민간 건축공사를 준공했지만, 건축주로부터 잔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 공사에서 건축주는 공사비 삭감분의 일부를 주기로 하고 전문 '하자 진단관'을 개입시켰다. 이를 통해 대수롭지 않은 하자까지 지적했고 교체된 이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업계, 불공정 계약 무효화 조항 등 개선책 마련 필요 설계변경도 구두 지시 아닌 서면통지 절차 도입 촉구

민간건축공사에서 건축주들의 '갑질'에 따른 건설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공짜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결국 건축주와 건설사 간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건설사로서는 건축주가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

그나마 추가공사를 해주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없으면 다행이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

아 소송으로 가는 일도 다반사라고 업계는 전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축주 입장에서 는 소송으로 가면 공사비를 덜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소송에서 지더라도 공사비 지급을 늦출 수 있어 일단 소송으로 가고 보자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실례 개선의 대안으로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공사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사 계약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54개 조사대상 건설사 가운데 45.3%인 115개사가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는다'(34%)라는 것이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공정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된 만큼 민간공사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주가 하도급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하도급이나 2차 협력업체 대금 미지급, 산재사고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지정하자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또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규정도 요구하고 있다. 공사지연에 대한 분량이 많은 만큼 지체상금 규정을 공공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민간공사 표준계약서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공공공사에서는 지체상금을 하루에 계약금액의 1000분의1로 규정하고 있다.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1000분의1'을 적용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공사감독원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건축주의 친인척 등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공사감독원을 맡다 보니 무리한 요구가 닦고 안전이나 품질 확보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설계변경 시 건축주의 구두 지시에 그치지 않고 건설사가 서면통지를 통해 설계변경 지시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두지시 경우 향후 추가공사를 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동성기자 jskim@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2년-3년'으로 단축

국도부-특허청 업무협약

앞으로 건설 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한 국도교통부 장관과 김명민 특허청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무형자산(MIA)지원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건설기업들이 최근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사기범세로 부담 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수 건설기술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 지원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건설 신기술과 특허를 연계 심사해 기존에 2년이던 심사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외 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데 지원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청의 정책 평가체계를 도입해 우수한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진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지원(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한 국도부장은 "양 기관 협력은 공동·동반이 되어 중소기업이포기할 수 없는 해외시장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국내 건설관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